어린이집 평가인증

1. 기본방향 ····· 235
2. 법적근거 ····· 235
3. 사업개요 ····· 235
4. 인증 운영체계 및 과정 ····· 236
5. 재참여 관리 ····· 246
6.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 247
7. 기본사항 확인 ····· 253

어린이집 평가인증

1 기본방향

○ 보육서비스에 대한 효과적인 질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2 법적근거

○ 법 제30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3 사업개요

○ 대상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한 모든 종일제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

○ 인증지표 : 어린이집 정원·운영형태별 3종(40인 이상, 39인 이하, 장애아 전문)

※평가영역, 항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함

○ 인증과정 : 3단계(참여확정, 현장관찰, 심의)

○ 수수료

– 신규인증·재인증 참여 수수료 45만원(100인 이상), 30만원(40인 이상), 25만원(39인 이하)

– 재참여 수수료 23만원(100인 이상), 15만원(40인 이상), 13만원(39인 이하)

– 확인방문 수수료 20~60만원(어린이집 규모 또는 확인방문 사유별 구분 적용)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도 정원에 따라 상기와 동일한 수수료 적용

○ 위탁 수행기관 : 한국보육진흥원

4 인증 운영체계 및 과정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신청단계

가. 신청 대상 어린이집

○ 신규인증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에 의하여 설치된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단체 등 어린이집, 직장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협동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방과후 전담 어린이집 제외)으로서 현재 미인증 상태인 어린이집

○ 재인증

–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한 어린이집

나. 신청 방법

○ 시기 : 연초 접수 개시일로부터 상시가능

○ 진행 : 기수별 모집

○ 방법 : 평가인증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신규인증, 재인증)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원하는 기수(신규인증) 또는 정해진 기수·시기(재인증)에 대해 신청

1단계 : 참여확정

가. 참여확정 자격(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

○ 평가인증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동법 제46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48조)이 종료된 어린이집, 동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명령을 이행 완료한 어린이집에 한함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경우 종료시점을 행정처분 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로 함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경우 참여 유지 가능

○ 지자체의 기본사항확인 결과 필수항목을 모두 준수한 어린이집

※필수항목 : 총정원준수, 예결산서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 검진, 비상대피시설 설치

○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참여수수료를 납부한 어린이집

○ 기수별 모집정원 범위 내에서 신청을 완료한 어린이집 중 상기 기본사항 확인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를 납부하면 참여대상으로 확정

※상기 1단계 “가. 참여확정 자격”에서 정한 요건(처분 종료, 기본사항 중 필수항목 모두 준수,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참여수수료 납부 중 어느 하나라도 미 충족 시 참여확정 대상이 될 수 없음

나. 진행일정

○ 신규인증 및 재인증

- 신규인증 및 재인증 신청을 마친 어린이집은 신청 기수의 참여확정월이 도래하면 아래 절차와 같이 기본사항확인,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를 완료하여야 함
- 시·군·구는 기수별 참여확정월이 도래하면 해당 기수에 신청한 어린이집의 기본사항(필수항목 및 기본항목) 준수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시·도 및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하고 필수항목이 미준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참여확정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

  ※ 기수별 진행일정, 재인증 기수별 참여대상, 자체점검 시행 및 자체점검보고서 작성 방법, 기본사항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

- 한국보육진흥원은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사항 확인 결과를 확인한 후, 필수항목을 준수한 어린이집에 대해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를 안내
- 어린이집이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하고 참여수수료를 납부할 경우 평가인증 참여대상 어린이집으로 확정

다. 참여수수료

○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참여수수료를 납부

- 참여수수료 : 45만원(정원 100인 이상), 30만원(정원 40인 이상), 25만원(정원 39인 이하)

  ※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도 정원에 따라 상기와 동일한 수수료 적용

○ 환불

- 평가인증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현장관찰자 파견 전	현장관찰자 파견 후
90%	50%	0%

※ 참여신청 포기 및 환불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

라. 참여확정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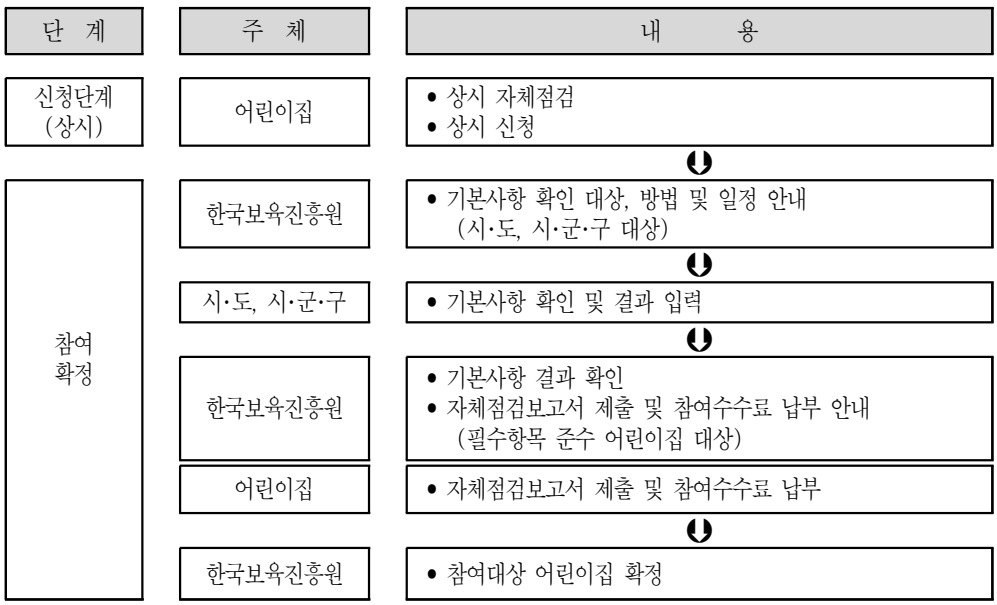

2단계 : 현장관찰

가. 현장관찰

○ 현장관찰자 파견

– 현장관찰자의 거주지와 어린이집 소재지를 지역별로 교차하여 배치 및 파견

– 어린이집 1개소당 2인(정원 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관찰자가 방문하여 1일간 관찰 실시

– 한국보육진흥원은 사전에 어린이집 각각에 대해 1주간의 관찰주간을 지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하며, 해당 관찰주간 중 현장관찰일을 정하여 사전 고지 없이 어린이집에 파견

※ 다만,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 또는 보육교직원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참여 어린이집별로 조정 가능

○ 현장관찰 실시

– 현장관찰자의 어린이집 도착 예정시간은 08:30~09:30이며, 관찰종료 예정시간은 16:30~17:30

– 현장관찰일에는 미임용 보육교직원을 확인하며, 타 어린이집에 임용 중인 보육교직원(원장 포함)은 관찰대상 어린이집에 근무 또는 지원활동 불가
– 현장관찰자는 관찰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재원상황,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하루일과표와 실내외배치도를 확인하여 관찰 시작
– 현장관찰자는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 2개반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
– 현장관찰은 하루 일과 전반에 걸쳐 관찰, 문서검토, 면담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

현장관찰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할 사항

① 일상적 일과 진행 및 현원·출석 기준 충족
– 현장관찰주간에는 어린이집에 견학 등 행사 없이 일상적 일과가 진행되어야 함
– 관찰 당일에는 영유아 정원의 1/3 이상이 현원으로 재원하고 현원의 2/3 이상이 출석하여야 함
※현장관찰일에 현원·출석(정원의 1/3 이상 현원으로 재원, 현원의 2/3 이상 출석)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관찰이 중단되며, 추후 불인증 처리 예정(심의시 필수확인 항목에 해당)
② 현장관찰 시 필요한 서류 준비
– 원아명단, 실내외배치도, 하루일과표, 우수사례 관련 문서와 평가인증지표 관련 문서 등

○ 현장관찰 후 상호확인
– 현장관찰 종료 전 어린이집의 원장과 현장관찰자는 평가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해 상호 확인한 후 '현장관찰 상호확인서'에 서명
※(상호확인서 항목) 영유아 정원/현원/출석 현황, 보육실 정보, 우수/부적절 사례, 평가인증 관련문서 구비 등

나. 현장관찰자 자격

○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 이상인 자
○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사 경력 3년을 포함하여 총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교사 경력은 유치원 교사 경력을 포함하되, 반드시 1년 이상 어린이집 근무경력(보육교사 또는 원장)이 있어야 함
※당해 연도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 평가인증 관련 업무(강의, 자문, 컨설팅 등)를 수행하는 경우, 평가인증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현장관찰자로 활동할 수 없음

○ 기타 현장관찰자 선발 및 현장관찰 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

3단계 : 심의

가. 평가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 평가인증 심의위원회는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으로 구성

○ 심의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위촉 가능

나. 심의 진행

○ 심의는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진행

○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확인서, 현장관찰보고서 등을 개별 검토한 후, 심의기준에 맞추어 심의위원회 의견서 작성

○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어린이집의 질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평가서를 작성

다. 심의기준

<table>
<tr><th>심의자료</th><th>심의기준</th></tr>
<tr><td>(1단계)
심의필수확인 항목</td><td>아래 중 하나 이상 해당 되면 “불인증” 결정
– 참여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참여변동사항”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 평가인증 진행 일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 현장관찰 시 발견한 부적절 사례가 심의기간까지 개선되지 않은 경우
– 현장관찰일의 현원·출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관찰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 필수항목 미준수 사례가 발견된 경우</td></tr>
<tr><td rowspan="5">(2단계)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관찰보고서 등</td><td>1. 어린이집의 특징과 장점</td></tr>
<tr><td>2. 평가인증지표에 따른 영역별 개선 노력</td></tr>
<tr><td>3. 보고서 등에 나타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td></tr>
<tr><td>4. 우수사례 및 부적절사례
<table>
<tr><th>우수사례</th><th>부적절사례</th></tr>
<tr><td>• 1급 교사 비율
– (40인 이상) 전체교사의 50% 이상
– (39인 이하) 전체교사의 40% 이상
• 1년 이상 근무교사가 전체교사의 70% 이상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운행
• 놀이시설 또는 조리원 임용
– (40인 이상) 놀이시설 설치 검사 필, 또는 놀이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어린이집의 놀이터 설치
– (39인 이하) 조리원 임용
•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td><td>• 보육교직원의 근무상황 부적절
• 반별 정원 탄력편성 허용범위 초과
•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 영유아 재원사항 부적절
• 혼합반 구성 원칙 무시</td></tr>
</table></td></tr>
<tr><td>5. 보고서 간 대비오차 (자체점검보고서와 현장관찰보고서 총점 간 차이)</td></tr>
</table>

※각 기수별로 심의 종료~결과발표 직전 최종심의를 실시하여 심의 필수확인항목 해당 여부 재확인(최종심의는 1단계만 실시)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1년 이내 아동학대 및 행정처분 등 위반사항이 발생하였거나, 예정인 경우 심의 시 반영될 수 있음

라. 부적절사례 확인 지자체 업무

○ 시·군·구는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통보받은 현장관찰 당일 발견된 어린이집의 부적절사례에 대하여 확인하고, 그 개선 결과를 7일 이내에 시·도로 통보

○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 후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으로 통보

※심의기간까지 부적절사례에 대한 개선결과가 통보되지 않을 경우 해당시설에 대해"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부적절사례 확인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상세내용
어린이집	현장관찰	• 부적절사례 발생
⇩		
시·군·구	부적절사례 개선확인	• 부적절사례 확인 및 개선결과 시·도 통보 • 부적절사례 미개선 어린이집 명단 시·도 통보
⇩		
시·도	부적절사례 개선결과 통보	• 부적절사례 개선결과 최종확인 및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	부적절사례 개선 결과 확인	• 부적절사례 개선결과 확인 • 부적절사례 미개선 시 심의 회부 등 관련 조치

마. 인증결정

○ 인증결정은 기본사항확인서 10%, 자체점검보고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의견서 25% 반영

구 분	반영비율
기본사항확인서	10%
자체점검보고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의견서	25%
계	100%

○ 인증결과는 총점 및 영역별 기준 점수에 의해 결정되며, 총점 및 영역별 기준 점수는 2.25점(3.00만점)/75점(100점만점)

○ 인증결과는 인증, 인증유보 및 불인증으로 구분

– 총점 및 모든 영역의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한 경우 ⇒ 인증

– 총점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 점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 인증유보(신규인증) 또는 불인증(재인증)

–“심의 필수확인 항목” 중 어느 하나 이상 항목에 해당될 경우 ⇒ 불인증

※단, 해당 시설이 참여변동사항 중 ①소재지 변경 또는 ②정원·유형 변경으로 다른 지표를 적용해야 할 경우 또는 ③대표자 변경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보육교직원(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중인 원장 또는 담임교사)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에 해당될 때는 시설에서 희망할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평가 실시 가능하며, “5. 재참여 관리”의 절차 및 수수료를 준용

※재인증 참여과정중 참여확정월 이후(기본사항 확인 시작일)~현장관찰 이전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관찰과 확인방문의 중복실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조정 가능

인증결과	총점	영역별 점수
인증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이상
인증유보(신규인증) 불인증(재인증)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미달

○ 신규인증 참여어린이집 중 결과가 인증유보인 어린이집은 재참여 가능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은 인증결과 발표일부터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인증결과 확인 가능

바. 인증유효기간

○ 인증 결과가 발표된 달의 15일부터 3년간 인증유효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한 재인증 사전신청 절차에 따라 신청일정을 변경하여 인증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변경 전 참여기수의 유효기간을 적용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대표자 변경 전까지 인증유효

※2011.8.4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대표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복지부 확인 결과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경우 인증유지 가능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보육교직원(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중인 원장 또는 담임교사)이 대표자로 변경된 어린이집의 경우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

○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 이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 어린이집 휴지 신고 후 6개월이 되는 날 또는 폐지 신고일 전일까지 인증유효

사.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① 시·군·구는 인증 어린이집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항을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③ 한국보육진흥원은 시·도로부터 통보 받은 사항 확인 후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및 관련 조치

- 해당 시·도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 및 인증서·현판 회수 협조 요청
-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

④ 시·군·구는 인증유효기간이 종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회수·폐기

▌인증유효기간 종료 절차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상세내용
어린이집	-	•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시·도 및 시·군·구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발생 통보	•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확인 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한국보육진흥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및 관련 조치	•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확인 후 처리 • 해당 시·도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 및 인증서·현판 회수 협조 요청 •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결과 안내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
어린이집 / 시·도 및 시·군·구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후처리 협조	• 인증서 및 인증현판 회수

※대표자 변경 및 어린이집의 운영을 6개월이상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만 시·도에 통보

아. 인증서, 현판 발급

○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배부

※인증현판 발급의 경우 신규인증 어린이집에 한함(재인증 어린이집은 기발급된 현판 사용)

자. 참여변동사항 확인

○ 인증 참여중인 어린이집에서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 발생할 경우, 해당 어린이집 및 시·군·구에서는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변동사항 발생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 제45조, 제45조의2,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을 받은 경우

- 평가인증 참여 전후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성폭력, 아동학대, 운영 부조리 등으로 인하여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고발 또는 고소되거나 수사, 재판 계류 중에 있는 경우
-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정원·운영형태가 변경된 경우(40인 이상 ↔ 39인 이하, 40인 이상·39인 이하 ↔ 장애아전문과 같이 지표의 유형이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 어린이집이 휴지 또는 폐지된 경우

○ 어린이집 또는 시군구에서 통보한 상기 변동사항에 대해 심의 과정 중“심의 필수 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한다.

- 변동사항 중 어느 하나 이상 해당될 경우“불인증”

※다만, 아래의 경우는 변동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 정지 또는 자격취소)이 발생하였으나,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 2011.8.4일 개정된 영유아보육법[법률 제 11002호]에 따른 국공립/사회복지법인/법인·단체 등/직장/협동 어린이집 또는 타 법령에 따른 법인·단체가 설치한 어린이집에서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나, 어린이집의 실소유권이 기존 기관/단체/법인 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차. 참여변동사항 통보 지자체 및 어린이집 업무

○ 시·도 또는 시·군·구

- 시·도 또는 시·군·구는 참여변동사항 발생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참여 어린이집

-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재인증의 경우 참여확정월 이후(기본사항 확인시작일))~결과발표 전에 참여변동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낸 업무연락 및 결과발표 전 설문지를 통해 참여변동 사항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통보받은 참여변동사항에 대해 심의 시 ‘심의 필수항목 확인’ 단계에서 반영

5 재참여 관리

○ 신규인증 참여 어린이집 중 인증심의 결과가 인증유보인 어린이집은 재참여 가능

○ 재참여 단계별 절차

➢ 재참여신청 ⇒ 재점검기간(2개월) ⇒ 재관찰/재심의(1개월 내외) ⇒ 결과통보

○ 재참여 신청

– 지정된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평가인증 재참여 신청 및 재참여 수수료 납부

– 재참여수수료 : 23만원(100인 이상), 15만원(40인 이상), 13만원(39인 이하)

– 환불 : 재참여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

재참여신청 마감일까지	현장관찰자(재관찰) 파견 전	현장관찰자(재관찰) 파견 후
100%	50%	0%

○ 재관찰/재심의

– 영역별 점수가 기준점수에 미달된 어린이집은 미달된 영역에 대하여, 총점의 기준점수가 미달된 어린이집은 전체 영역에 대하여 재관찰 진행

– 재참여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기본사항 및 우수사례·부적절사례를 재확인

○ 재참여 결과

– 재참여 인증결과는 인증과 불인증으로 구분하며, 불인증일 경우 해당 참여과정은 모두 종료

재참여 인증결과	총점	영역별 점수
인 증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이상
불인증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이상
	기준점수 미달	기준점수 미달

6 평가인증 어린이집 사후관리

가. 연차별 자체점검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인증기간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 시스템으로 제출

–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관리

인증발표 시기	1 ~ 6월	7 ~ 12월
연차별 자체점검 및 보고서 제출	상반기 (익년 5.1. ~ 6.15.)	하반기 (익년 11.1. ~ 12.15.)

– 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

나. 원장 및 교직원 변동에 따른 사후관리

○ 평가인증 어린이집 신임 원장 교육

–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원장이 교체된 경우(이를 신임 원장이라 칭함), 신임 원장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신임 원장 교육을 아래와 같이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원장이 교체된(임면 보고일 기준) 이후 실시되는 3회차 교육 내에 1회 교육을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여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확인방문을 실시하여 인증유지 여부를 결정

※ 교육장소 및 일정은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cpi.or.kr)에 안내

– 다만, 이전에 근무하였던 어린이집에서 신임 원장 교육을 기 이수한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최근 3년 이내 원장으로서 평가인증 참여이력이 있는 자로 원장이 교체되었을 경우에는 신임 원장 교육 신청 기한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으로 교육대상 면제신청을 하면 교육 이수대상에서 제외됨

※ 면제대상 신청기한은 3회차 교육 신청마감일

○ 평가인증 관련 보육교직원 교육 정보 제공

– 한국보육진흥원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잦은 이동 등 보육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인증지표 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육(온라인 포함) 등을 통해 제공

다. 확인점검

○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방문하여 인증수준의 보육서비스 질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

○ (확인내용) 운영형태별 평가인증지표 전 영역, 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부적절사례

○ (결과반영) 확인점검 결과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자체 개선 기회를 부여하여 품질이 지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98점 이상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부적절사례 미발생인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유효기간 1년 연장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95점 이상 98점 미만이면서 필수항목 준수 및 부적절사례 미발생인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 종료일로부터 유효기간 6개월 연장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일 경우 자체 개선
- 최초 확인점검 점수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자체 개선 후 일정 기간 이후에 재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재확인점검 결과가 75점 미만이거나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재확인점검이 진행되지 않았을 경우 당초 인증유효기간에서 6개월 감축

※ 재확인점검 결과 기준 미충족 시 어린이집의 실비 부담(확인방문 수수료에 준함)으로 재확인점검을 계속 실시하며, 재확인점검 대상이 될 때마다 인증유효기간을 6개월씩 감축

○ 확인점검 결과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확인점검 실시 이후 점검결과를 어린이집으로 통보하고, 결과에 따른 사후조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지자체로 통보
- 지자체에서는 사후조치 관련 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하고 한국보육진흥원으로 결과 회신

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의 이해관계가 드러난 경우

> • 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보육교직원이 현장관찰자와 직계 존·비속의 관계인 경우
> • 현장관찰자의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재원한 경험이 있는 경우
> • 현장관찰자가 해당 어린이집에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 • 원장이 현장관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참여과정 중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서류나 진술 등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대표자 또는 원장이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③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명령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또는 제46조부터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④ 대표자, 원장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

⑤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실시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소재지 변경
- 정원·운영형태 변경(40인 이상 ↔ 39인 이하, 40인 이상·39인 이하 ↔ 장애아전문과 같이 지표의 유형이 상호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 원장이 변경된 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관련 신임 원장 교육을 지정된 기간 내 미이수

※확인방문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마. 인증취소 절차 및 지자체 업무

① 시·군·구는 인증 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에 통보

※시·군·구는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안내

② 시·도는 시·군·구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한 후 발생 사실 및 관련 서류를 7일 이내에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③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시·도로부터 통보 받은 인증취소 사항을 확인하고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처분의 내용을 사전 통지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 해당 어린이집은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에서 제출한 의견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한국보육진흥원)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

④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의견제출 기한 경과 이후에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인증취소처분 확정 및 관련 조치

– 보건복지부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처분서를 통지하고, 시·도에 인증취소 처분 확정 사실 안내 및 인증서·현판 회수 협조 요청

※ 인증취소 처분시점부터 인증취소 효력 발생

⑤ 시·군·구는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인증취소 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회수·폐기

▌인증취소 절차 업무흐름도▐

업무주체	주요업무	상세내용
어린이집	–	•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도 및 시·군·구	인증취소사유 발생 통보	•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인증취소사유 발생 안내
보건복지부 (한국보육진흥원)	처분 사전통지 후 인증취소 처분 통지	• 인증취소 사유 확인 후 어린이집에 처분 사전통지 • 사전통지 기간 경과 후 어린이집에 처분서 통지 • 시도 및 시군구에 인증취소 처분내용 통보 및 협조 요청
어린이집 / 시·도 및 시·군·구	인증취소 사후처리 협조	• 인증서 및 인증현판 회수

바. 확인방문

○ 확인방문 신청

–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사유 중 확인방문 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아래의 신청 기한 내에 한국보육진흥원으로 확인방문을 신청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소재지 변경 또는 정원·운영형태 변경 : 변경인가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해당 어린이집에서 연속하여 1년 이상 재직 중인 보육교직원(원장 또는 담임교사)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 연차별자체점검보고서 미제출, 신임 원장 교육 미이수 : 확인방문 대상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정해진 신청 기한 내에 확인방문신청서 제출(증빙서류 첨부) 및 수수료 납부
- 증빙서류 : 변경인가증(앞뒷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의 경우 관계 확인문서*,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경력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확인 가능한 서류(변경인가일 이후 발급)도 함께 제출

<유의사항>

○ 확인방문의 미신청 또는 수수료 미납에 따른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중 확인방문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이 정해진 기간 내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인증유지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인증취소 및 인증유효기간 종료 처리

○ 확인방문 수수료
- 확인방문자 파견인원에 따라 1인(20만원), 2인(40만원), 3인(60만원)
- 확인방문 대상 어린이집은 통보된 기간 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함
- 확인방문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환불

구 분	확인방문자 파견 전	확인방문자 파견 후
환 불	100%	0%

※ 확인방문 신청 포기 및 환불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별도로 정하여 고지

○ 확인방문 실시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 보육교직원이 대표자로 변경된 경우
  - 확인방문자 2인(정원 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확인방문자 3인(정원 100인 이상 어린이집)이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실시
  - 확인내용 : 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부적절사례, 평가인증 지표 전 영역
- 그 외 확인방문 사유 발생 시
  - 확인방문자 1인이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어린이집에 방문하여 실시

• 확인내용 : 평가인증 필수항목 및 부적절사례, 평가인증 지표 중 해당 영역

40인 이상 및 장애아전문 : 1영역 보육환경, 5영역 건강과 영양, 6영역 안전
39인 이하 : 1영역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4영역 건강과 영양, 5영역 안전

※재인증 참여과정 중 참여확정월 이후(기본사항 확인 시작일)~현장관찰 이전 확인방문 사유 발생에 따라 확인방문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장관찰과 확인방문이 중복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조정 가능

○ 인증유지 여부 결정

– 필수항목 준수 및 모든 영역의 점수가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 인증유지, 필수항목 미준수 또는 영역별 점수가 기준점수 미만일 경우 인증취소 또는 인증유효기간 종료

※단, 대표자 변경에 따른 확인방문 미신청 또는 자체포기 하는 경우 인증종료일자는 확인방문 사유 발생일 전 까지로 하며, 확인방문을 통해 인증유효기간 종료가 결정되는 경우 인증유효기간 종료일자는 확인방문 결과통보일로 함

○ 확인방문 결과 통보

– 한국보육진흥원은 확인방문 실시 익월 중순경에 해당 어린이집의 확인방문 결과를 지자체 및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

– 지자체에서는 사후조치 관련 사항을 해당 어린이집으로 통보

7 기본사항 확인

가. 필수항목 : 9항목

항 목	평 정	평정기준
총 정원 준수	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 이내인 경우
	미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을 초과한 경우
예·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준수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8] 참조
	미준수	예산서 또는 결산서가 없는 경우 회계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준수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과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및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미준수	영유아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화재보험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 완료될 예정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미준수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지 않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경우 보호자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설치하지 않을 것으로 신고하거나,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설치 면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미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실의 설치기준	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 기존어린이집('05. 1. 29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법 적용

항 목	평 정	평정기준
	미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미준수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준수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년도 (또는 전년도) 기록 검토
	미준수	건강검진에서 누락된 보육교직원이 있는 경우
비상대피시설 설치	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확인
	미준수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였는지 확인

나. 기본항목

평정	구분	평정기준	감점
10점 만점에서 평정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운영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영유아보육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8점
		–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6점
		–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운영정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4점
		※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한 경우에도 운영정지 산정기간에 따름	
	보조금 반환명령*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금액이 3백 만원 이상인 경우	5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금액이 3백 만원 미만인 경우	3점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	2점
	원장 자격정지,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제46조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6점
		–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5점
		– 그 밖의 사유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점
		영유아보육법 제48조	3점
	보육교사 자격정지, 자격취소*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자격정지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4점
		– 자격정지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점
		영유아보육법 제48조	2점
		※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의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과실과 무관한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	
	시정명령*	영유아보육법 상 시정명령 2건 이상	2점
		영유아보육법 상 시정명령 1건	1점
	식품 위생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 ※ 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제95조제1호 또는 제4호, 제97조제1호 또는 제2호	3점
		식품위생법 제101조 과태료 ※ 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2점
		식품위생법 제71조 시정명령 또는 제74조 시설 개수명령	1점
	예·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아래의 사항 중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 (세입, 세출)예·결산서 구비 : 구체적 산출기초 명기 – 수입·지출 기록 명확 : 영수증 – 수입 : 금융기관을 통한 수납, 납부고지서 발급 – 지출 : 어린이집 전용 신용(체크)카드 결제, 계좌입금 ※ 보육사업안내의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원칙을 준수하는지 확인	2점

*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발생하였거나, 발생 예정인 경우

※ 전체 감점 점수가 10점을 초과 할 경우 10점까지만 감점 처리